

충청북도청소년대상조례중개정조례(안)

충청북도청소년대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(수상후보자 추천) 수상후보자는 “시장, 군수, 학교장 또는 수상후보자 소속기관, 단체장이 추천한 자를 시군 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에서 1차 심의후 추천함을 원칙으로 한다”를 “시장, 군수, 출장소장이 추천한다”로 한다.

제5조(수상자 심사 및 결정)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5조(심사위원회 설치) 청소년대상 수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충청북도
년대상심사위원회(이하 “심사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제6조내지 제8조를 제11조내지 제13조로 하고, 제6조 및 제7조, 제8조, 제9조
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6조(심사위원회 구성) ①심사위원회는 위원장,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
15인이내로 구성한다.

②위원장은 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가정복지국장이 되며, 위원은 관련공
무원, 청소년관계 전문인사, 관련단체의장 중에서 추천 마감일후 10일이내
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시상종료시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.

제7조(위원장등의 직무) ②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, 그 회무를 총괄한다.

③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때에는 그 직무를 대
행한다.

제8조(회의)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②회의는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③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9조(수상자 결정) 수상자 결정은 각 부문별로 심사위원회의 예심을 거쳐 전체 심사위원회의 심사후 도지사가 각 부문별로 결정한다.

제10조(간사와 서기) 위원회의 간사는 청소년과장이 되고, 서기는 담당계장이 된다.

11조(시상) 제1항중 “12월”을 “5월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